

『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!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 !
더불어민주당 노원 제3선거구 봉양순 의원입니다.
-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한
『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』
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
합니다.
-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 제
정을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우리나라의 독특한 ‘전세’ 라는 제도가 완충 역할을 하
고는 있지만, 집을 마련하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
‘집’ 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가계(家計)를 위
협하고 있고, 특히 전세로 시작할 수 없는 신혼부부나 청
년들에게는 ‘월세’ 를 감당하기도 힘들고, 감당 못하는

사람들에게는 ‘주거의 질’ 자체를 낮춰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시의회는 2015년 1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「사회주택 활성화 조례」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
-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‘주거비가 부담 가능한가(Affordability)?’, ‘주거의 질(Quality of residence), 즉 살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?’ 5년이 지났지만 그 두 가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
- 그리고 지금, 우리는 기성세대가 애써 외면해 왔던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합니다. ‘주거의 질을 낮춘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가?’
- 지난 4월 29일 민생위에서 직접 확인한 아동 주거빈곤 현장에서 아이들은, 햇빛 한 줄기 들지 않고, 천장은 내려앉고, 집안 곳곳에 곰팡이와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
-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할 ‘집’ 이, ‘고통’ 이 되고, ‘가난의 낙인’ 이 되어 아이들이 평생을 짊어지게 될 멍에가 되고 있었습니다.

- 지난 ‘서울시장과의 아동주거빈곤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’ 자리에서 확인했듯이,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아동주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행동의 시작은 법·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.
- 이상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주요 내용

- 첫 째.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둘 째. “아동 주거빈곤”을 정의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놓일 수 있는 아동과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정책의 대상으로 함 (안 제2조)
- 셋 째.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정의하고, 보호종료아동이 처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넷 째.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다섯째.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)

- 『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』

은 아동을 서울시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, 서울시 현실에 맞는 ‘아동 적정주거기준’ 을 설정하여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한 민생실천위원회의 조례 제정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아동 주거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·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,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